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389호 2019. 5. 27.(월)

규 칙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

공 고

- 소하천 점용허가 공고 ----- 7
○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8

회람							
----	--	--	--	--	--	--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9년 5월 27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1768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0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7. 지역밀착형 생활SOC 관련 업무

제5조의2에 제8호, 제10호부터 제11호, 제13호, 제16호, 제23호, 제27호, 제29호를 삭제하고, 제33호부터 제3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삭제

10. 삭제

11. 삭제

13. 삭제

16. 삭제

23. 삭제

27. 삭제

29. 삭제

33. 목포문화재단 운영지원 및 지도

34. 작은도서관 조성 및 관리지도

35. 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리

36. 영어도서관 운영 관리

- 37. 연산완충녹지 야외공연장 사용승인
- 38.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운영·관리
- 39.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제2호, 제50호를 삭제하고,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삭제
- 50. 삭제
- 115. 유달회 운영

제13조제77호부터 제7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7. 부랑인 입퇴소 관리
- 78. 부랑인 복지시설 지도·감독

제14조에 제24호, 제34호를 삭제하고,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 삭제
- 34. 삭제
- 41.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

제25조제148호부터 제14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8.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
- 149. 예비군육성지원

제38조제2항 제50호를 삭제하고,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0. 삭제
- 51.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추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기획예산과) ----- -----.
1. ~ 106. (생 략)	1. ~ 106. (현행과 같음)
<신 설>	107. 지역밀착형 생활SOC 관련 업무
제5조의2(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의2(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예술촌 조성 및 운영	8.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문화의 집 조성 및 운영·관리	10. <삭 제>
11. 목포문화재단 운영	11. <삭 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작은 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리	13. <삭 제>
14. ~ 15. (생 략)	14. ~ 15 (현행과 같음)
16. 야외놀이마당 유지관리	16. <삭 제>
17. ~ 22. (생 략)	17. ~ 22 (현행과 같음)
23. 목포를 빛낸 명인선정 및 조형물 설치	23. <삭 제>
24. ~ 26. (생 략)	24. ~ 26 (현행과 같음)

27. 노적봉 예술공원 운영·관리	27. <삭 제>
28. (생 략)	28. (현행과 같음)
29. 공연작품 기획, 제작, 공연에 관한 사항	29. <삭 제>
30. ~ 32. (생 략)	30. ~ 32 (현행과 같음)
<신 설>	33. 목포문화재단 운영지원 및 지도
	34. 작은도서관 조성 및 관리지도
	35. 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리
	36. 영어도서관 운영 관리
	37. 연산완충녹지 야외공연장 사용 승인
	38.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운영·관리
	39.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자치 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자치 행정과)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방위협의회 및 유달회 운영	2. <삭 제>
3. ~ 49. (생 략)	3. ~ 49. (현행과 같음)
50. F1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	50. <삭 제>
51. ~ 114. (생 략)	51. ~ 114. (현행과 같음)
<신 설>	115. 유달회 운영
제13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사회복지과) ----- -----.

1. ~ 76. (생 략) <신 설> 제14조(노인장애인과) 노인장애인과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3. (생 략) 24. 정신요양시설·부랑인 복지시설 지도· 감독 25. ~ 33. (생 략) 34. 부랑인 입퇴소 관리 35. ~ 40. (생 략) <신 설> 제25조2(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7. (생 략) <신 설> 제38조 (하부조직) ② 도시재생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 49. (생 략) 50. 지역밀착형 생활SOC 관련 업무 <신 설>	1. ~ 76. (현행과 같음) 77. 부랑인 입퇴소 관리 78. 부랑인 복지시설 지도·감독 제14조(노인장애인과) ----- -----. 1. ~ 23. (현행과 같음) 24. <삭 제> 25. ~ 33. (현행과 같음) 34. <삭 제> 35. ~ 40. (현행과 같음) 41. 정신요양시설 지도·감독 제25조2(안전총괄과) ----- -----. 1. ~ 147. (현행과 같음) 148.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 본부 설치·운영 149. 예비군육성지원 제38조 (하부조직) ② ----- -----. 1. ~ 49. (현행과 같음) <삭 제> 51.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새뜰마을) 추진
---	--

목포시 공고 제2019-730호

소 하 천 점 용 허 가 공 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목 포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라*산업(주)		
	대표자 (성 명)	송*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소하천명		삼향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목포시 석현동 667-88		
	면적	10 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19. 5. 15. ~ 2024. 5. 14.(5년)		
	목적 및 사유	오수관로 매설		

열람서류 :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 m²(재활용품)]

목포시 공고 제2019-735호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7일

목 포 시 장

1. 개정 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이 2019. 5. 9일자 개정됨에 따라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금고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어려운 한자어 정비(제2조제3항) : 계리 → 회계 처리
-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공개 조항 신설(제11조제5항)
 - 평가결과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시 행정안전부에 보고 조항 신설 (제15조제4항)
 -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 변경 (별표 1)
 -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32점 → 27점
 -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18점 → 20점
 -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 20점 → 21점
 -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 : 21점 → 25점
 -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 9점 → 7점

○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세부항목 일부 변경 (별표 1)

-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편리성

→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기업 및 가계자금 대출실적 항목 삭제

3. 개정조례안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임

5. 관계법규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 평가(감사실) : 해당 없음

○ 성별영향 분석 평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 해당 없음

8. 예산사항 : 해당 없음

9. 입법예고 : 2019. 5. 27. ~ 2019. 6. 17. (22일 간)

10.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1. 기타 참고사항 : 없음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계리”를 “회계 처리”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협력사업비등 처리방법) ① 협력사업비 처리방법은 금고약정서에 명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 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목포시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방회계법」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4 4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방회계법」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6점)로 평가 - 고정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률 (건전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산형 농수산립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감사기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9) 6 6 5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추가배점 불가	(7) (6) (4) (3)	
3. 지역주민이용편의성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 업무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세정정보센터운영 능력 및 계획	(6) (8) (8)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5) (2)	

붙임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① ~② (생략) ③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 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u>계리</u>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④ ~⑥ (생략)	제2조(정의)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회계 처리----- ----- -----.
제4조(평가기준) ① ~② (생략) ③ 시장은 금고지정관련 협력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1. <u>협력사업비(출연금) 처리방법은 금고약정서에 명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다.</u> 2. <u>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u>	제4조(평가기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
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
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
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
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
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 절차)

① ~ ④ (생략)

< 신 설 >

< 신 설 >

제11조(지정 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사업비등 처리방법) ①

협력사업비 처리방법은 금고약정
서에 명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시장
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
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
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

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연평균 협력사업비(복수금고의 경우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생략)

제16조(현행 제15조와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1] 목포시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제4조 관련)	[별표 1] 목포시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제4조 관련)																																																																														
<table><tr><th>세부항목</th><th>배점</th><th>비고</th></tr><tr><td></td><td>100</td><td></td></tr><tr><td>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td><td>32</td><td></td></tr><tr><td>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td><td>(10) 6 4 (22) 7</td><td></td></tr><tr><td>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률 (건전성)</td><td>7 6 2</td><td></td></tr><tr><td>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td><td>18</td><td></td></tr><tr><td>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마. 삭제</td><td>(6) (5) (4) (3) 삭제</td><td></td></tr><tr><td>3. 지역주민이용편의성</td><td>20</td><td></td></tr><tr><td>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기업 및 가계자금 대출실적</td><td>(5) (6) (7) (2)</td><td></td></tr><tr><td>4. 금고업무 관리능력</td><td>21</td><td></td></tr><tr><td>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 업무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라. 세정정보센터운영 능력 및 계획</td><td>(5) (7) (7) (2)</td><td></td></tr><tr><td>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td><td>9</td><td></td></tr><tr><td>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td><td>(5) (4)</td><td></td></tr></table>	세부항목	배점	비고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2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6 4 (22) 7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률 (건전성)	7 6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마. 삭제	(6) (5) (4) (3) 삭제		3. 지역주민이용편의성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기업 및 가계자금 대출실적	(5) (6) (7) (2)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1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 업무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라. 세정정보센터운영 능력 및 계획	(5) (7) (7) (2)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5) (4)		<table><tr><th>세부항목</th><th>배점</th><th>비고</th></tr><tr><td></td><td>100</td><td></td></tr><tr><td>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td><td>27</td><td></td></tr><tr><td>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td><td>(8) 4 4 (19) 6</td><td></td></tr><tr><td>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률 (건전성)</td><td>6 5 2</td><td></td></tr><tr><td>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td><td>20</td><td></td></tr><tr><td>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삭제></td><td>(7) (6) (4) (3) <삭제></td><td></td></tr><tr><td>3. 지역주민이용편의성</td><td>21</td><td></td></tr><tr><td>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삭제></td><td>(8) (6) (7) <삭제></td><td></td></tr><tr><td>4. 금고업무 관리능력</td><td>25</td><td></td></tr><tr><td>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 업무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라. 세정정보센터운영 능력 및 계획</td><td>(6) (8) (8) (3)</td><td></td></tr><tr><td>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td><td>7</td><td></td></tr><tr><td>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td><td>(5) (2)</td><td></td></tr></table>	세부항목	배점	비고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4 4 (19) 6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률 (건전성)	6 5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삭제>	(7) (6) (4) (3) <삭제>		3. 지역주민이용편의성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삭제>	(8) (6) (7) <삭제>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 업무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라. 세정정보센터운영 능력 및 계획	(6) (8) (8)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5) (2)	
세부항목	배점	비고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2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10) 6 4 (22) 7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률 (건전성)	7 6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마. 삭제	(6) (5) (4) (3) 삭제																																																																														
3. 지역주민이용편의성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편리성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기업 및 가계자금 대출실적	(5) (6) (7) (2)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1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 업무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라. 세정정보센터운영 능력 및 계획	(5) (7) (7) (2)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5) (4)																																																																														
세부항목	배점	비고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 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4 4 (19) 6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방회계법」 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률 (건전성)	6 5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삭제>	(7) (6) (4) (3) <삭제>																																																																														
3. 지역주민이용편의성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삭제>	(8) (6) (7) <삭제>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 업무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라. 세정정보센터운영 능력 및 계획	(6) (8) (8)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5) (2)																																																																														

붙임 2

관련법규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 5. 9. 개정)]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 정 안 전 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1. 총 칙

① 목 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②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

② 일반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

③ 특별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④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⑤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③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④ 금고의 수

-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⑤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2. 금고지정 방법

① 개 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②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 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3.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 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
 -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 2항 및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제20조 2항에 따른 지방세입금 납부·수납처리를 위한 전자적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

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음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다만,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지 칙	조례 또는 규칙안 예시
6. 기타사항(11)	6. 기타사항(11) - 항목 가. 지역재투자 실적(3) - 세부항목 *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나. 주민의견 수렴결과(5) - 세부항목 *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금고 지정·운영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20년부터 세부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반영 가능 다. 0000(3) - 세부항목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순위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2는 5%적용)

지 칙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산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 (1순위 4.0점, 2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전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산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1순위 7.0점, 2순위 6.65점, 최저순위 4.2점)

(예시③) 항목 6(자치단체 자율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지 침	조례 또는 규칙안(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 - 총자본비율(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으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6) - 자기자본이익율(5)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감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 총자본비율(6)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으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6) - 자기자본이익율(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적립율 등(2) - 항목추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감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4)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3) - 항목추가 ※ 추가배점 불가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7)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8) - 추가배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 추가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 추가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3) - 항목추가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2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②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③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2014.3.7. 개정·시행한 동 예규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3.1.부터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

②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 <법제처 유권해석('02.5.31)> —

- 금고지정약정에 출연금이 금고의 지정에 대한 대가적 의미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반대급부에 의한 것이어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③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④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

- 자치단체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
 - **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 복수금고의 경우에도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4. 금고의 지정절차

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시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결과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④ 평가결과의 공개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

⑤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5. 금고약정 및 해지

①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②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보 칙

① 금고운용 보고

- 자치단체의 장은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함
-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토록 하여야 함

②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②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부 칙

- 이 예규는 2019년 5월 9일부터 시행함

<별 표>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산협 농수산업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5 (8) (17)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17 (7) (6)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18 (7) (5)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22 (6) (8)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7 (5) (2)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반영 가능 * '20년부터 자율항목 점수를 활용하여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영 가능	11	

붙임 3**현행 조례****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목포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금고”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12·17, 2019. 4. 15.>
- ②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 ③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 ④ “기금”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2·12·17>
- ⑤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⑥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을 말한다. <개정 2017.6.5>

제3조(금고의 지정)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7, 2015. 6. 1.>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 제6조에 따른 금고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개정2015. 6. 1.>

2.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신설 2015. 6. 1.>

3. 삭제<2012. 12. 17>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목적 및 특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구분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2. 12. 17, 2015. 6. 1., 2019. 4. 15.>

③ 지정된 금고와의 계약기간은 4년이내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개정 2015. 6. 1.>

제4조(평가기준) ① 시장이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대내·외적인 신용도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4. 재무구조의 안정성
 5. 금고업무의 관리능력
 6.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개정 2012·12·17>
 7. 그 밖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 별표 2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시장은 금고지정관련 협력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1. 협력사업비(출연금) 처리방법은 금고약정서에 명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개정 2012.12.17>
2.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

3. 제2호에 따라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 내역과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④ 심의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금고제안의 제출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해촉 후에도 또한 같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하는 경우 사전 심의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시금고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금고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사망·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지정 절차) ① 시장은 금고 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만료 90일 전까지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은행법」 및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목포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에 한함)에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2·12·17, 2019. 4. 15.>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 심사표를 바탕으로 금고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한다.

제12조(금고약정) ① 금고를 지정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금고약정을 체결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목포시 표준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12.17>

④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1.>

제13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

③ 중도 해지시 재계약은 당초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과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7, 2015. 6. 1.>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등 자금관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6. 1.>

③ <삭제 2017.6.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12.17 조2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4·10 조27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5. 6. 1. 조2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6. 5. 조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3248호, 2019. 4. 1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개정 2012.12.17, 2015. 6. 1., 2019. 4. 15.>

목포시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2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방회계법」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방회계법」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률 (건전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산업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으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감사기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0) 6 4 (22) 7 7 6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8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마. 삭제 ※ 추가배점 불가	(6) (5) (4) (3) 삭제	
3. 지역주민이용편의성		20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편의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기업 및 가계자금 대출실적	(5) (6) (7) (2)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1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 업무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세정정보센터운영 능력 및 계획	(5) (7) (7) (2)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5) (4)	

[별표 2] <개정 2015. 6. 1.>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4조 관련)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 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